

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혜 지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
김 혜 지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

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)’을 활용하도록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이 개정(시행 2024.7.10.)되었습니다.

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 품

질시험 대행 의뢰 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, 품질검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